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5.09.30]
(제정) 2025.09.30 조례 제2298호

관리책임부서명 : 정보통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40-4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연구개발·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할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육성
2.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 연구·개발, 사업화 등 지원
3.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창업 지원
6.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7. 인공지능 관련 정보, 기술, 인력 등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파주시 인공지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등)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2025. 9. 30. 조례 제2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